

사업자용

# 개정 건강증진법 대응 서포트 북



# STOP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없애자!

- 다수의 시설에서 실내가 원칙상 금연으로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장소에 출입금지로

- 실내에서 흡연할 때는 흡연실 설치가 필요로
- 흡연실에는 표지 게시가 의무화로

나고야시 간접흡연



## 사업자 여러분에 대한 부탁

###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담배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건강증진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8년 7월에 성립되었습니다. 앞으로 2020년 4월 1일 전면 시행을 위해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큰 어린이, 환자 등 여러분을 배려하고 많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 구분에 따라 시설의 일정 장소를 제외하고 흡연을 금지하는 동시에 관리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해 정한 법률입니다.

강구해야 할 조치의 예로써 실내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할 때는 관리자가 시설 출입구에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표지 게시를 게을리하고 행정에 의한 지도 등도 따르지 않는 악질 경우에는 행정처분(과태료 적용) 대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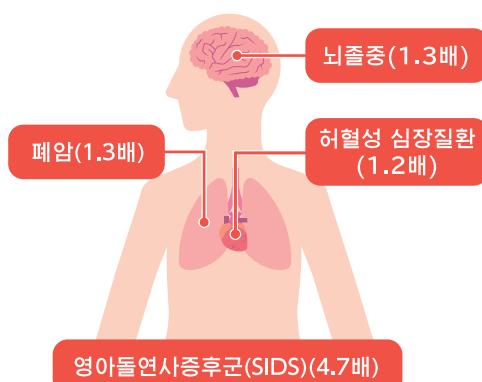
나고야시는 ‘건강 나고야 플랜 21(제2차)’에 따라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마음이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에 관한 룰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영향에 관하여

간접흡연으로 리스크가 높아지는 병\*에는 폐암,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약 15,000명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질환들로 사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충분한(확실한) 증거가 있는 병

#### 간접흡연으로 리스크가 올라가는 병



( )...간접흡연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병에 걸릴 리스크가 몇 배인가?

**출처** '흡연과 건강 흡연의 건강 영향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국립 암연구센터 암 정보 서비스

#### 간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수 추계치

	남성	여성
폐암	627	1,857
허혈성 심장질환	1,571	2,888
뇌졸중	2,325	5,689
소계	4,523	10,434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	73	
<b>합계</b>		<b>15,030(명)</b>

\* 각 질환 사망자 수의 몇 %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것인가를 계산하여 그 비율에 2014년 사망자 수를 곱하여 산출했다.

**출처** 후생노동 과학연구비 보조금 순환기질환·당뇨병 등 생활습관병 대책종합연구사업 ‘담배 대책 건강 영향 및 경제적 영향의 포괄적 평가에 관한 연구’

#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이 됩니다.

귀하 시설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무언가 대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플로차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대책을 확인하십시오.

귀하 시설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등 행정기관 중 하나입니까?

A 예

B 아니요

B 아니요

귀하 시설에서는  
담배를 대면 판매하고  
있습니까?

A 예      B 아니요

예  
A

귀하 시설은  
'시거 바(스낵바), 담배  
판매점' 입니까?

A 예      B 아니요

\* 시거 바(스낵바), 담배 판매점 요건은  
5쪽을 참조

B 아니요

B 아니요

A 예

귀하 시설은 “음식점이고”, “동시에 아래 3개 조건”  
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1. 2020년 4월 1일 시점에서 영업하고 있다
2. 객석 면적 100㎡ 이하
3.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본금 5천만엔 이하)이 경영

A 예      B 아니요

B 아니요

A 예

분류  
**1**

음식점  
(기존 소규모를 제외)•  
사무실 등

3쪽 참조

분류  
**2**

음식점  
(기존 소규모)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4쪽 참조

분류  
**3**

시거 바  
(스낵바)•  
담배 판매점

5쪽 참조

분류  
**4**

학교·병원 등

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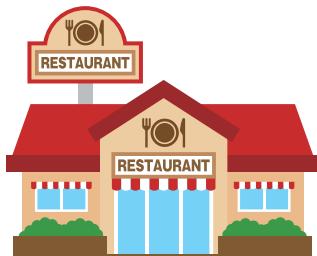


# 1 음식점(기존 소규모를 제외)·사무실 등인 분

제2종 시설 등

대상

음식점(기존 소규모를 제외), 사무실, 공장, 호텔, 여관,  
철도, 선박 등



귀하 시설은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입니다.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음식 등의 제공 여부, 흡연할 수 있는 담배의 종류,  
흡연장소 범위에 따라 대응이 바뀝니다.

## 필요한 대응 등

### ■ 흡연실 설치 패턴

	흡연장소 범위	
	시설 일부	시설 전부
● 음식 등 제공 가능 ● 담배 흡연 가능	식음 가능한 흡연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설 전부를 흡연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음식 등 제공 가능 ● 가열식 담배만 흡연 가능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을 설치한다 (경과 조치) 7쪽 참조 	
● 음식 등 제공 불가 ● 담배 흡연 가능	흡연 전용실을 설치한다 7쪽 참조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입니다.

\* 여객 운송 사업 선박·철도 차량 내(선내)의 흡연실은 흡연 전용실 또는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사람이 거주용으로 제공하는 장소(주택, 호텔이나 복지시설 개인실 등)는 법률 규제 대상 밖입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 2 음식점(기존 소규모)인 분

제2종 시설

대상

다음 3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음식점

- ① 2020년 4월 1일 시점에서 영업하고 있다
- ② 객석 면적 100m<sup>2</sup> 이하
- ③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본금 5천만엔 이하)이 경영



귀하 시설은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입니다.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음식 등의 제공 여부, 흡연할 수 있는 담배의 종류, 흡연장소 범위에 따라 대응이 바뀝니다.**

### 필요한 대응 등

#### ■ 흡연실 설치 패턴

	흡연장소 범위	
	점내 일부	점내 전부
● 음식 등 제공 가능 ● 담배 흡연 가능	<p>흡연 가능실을 설치한다 (경과 조치)</p> <p>8쪽 참조</p> <p>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p> 	<p>흡연 가능점으로 한다 (경과 조치)</p> <p>8쪽 참조</p> <p>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p> 
● 음식 등 제공 가능 ● 가열식 담배만 흡연 가능	<p>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을 설치한다 (경과 조치)</p> <p>7쪽 참조</p> 	
● 음식 등 제공 불가 ● 담배 흡연 가능	<p>흡연 전용실을 설치한다</p> <p>7쪽 참조</p> 	<p>시설 전부를 흡연 전용실로 할 수 없습니다.</p>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입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규제가 적용됩니다.

### 3 시거 바(스낵바), 담배 판매점인 분

대상

##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 스낵바 등 가게 안에서 흡연 가능한 담배 판매점



**귀하 시설은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입니다.  
점내 일부 또는 전부를 흡연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 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 스낵바 등의 요건

- ① 담배 대면 판매(출장 판매를 포함)를 하고 있을 것
- ② 시설 실내 장소에서 흡연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것
- ③ 설비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식음을 시킬 수 있는 영업('일반적으로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주)'를 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하고 있을 것  
(주) 밥 종류, 과자 빵을 제외하는 빵류, 면류 등

### 담배 판매점의 요건

- ① 담배 또는 흡연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구의 판매(담배 판매에 관해서는 대면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제한한다.)를 하고 있을 것  
동시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진열된 선반 중에 담배 또는 오로지 흡연 제공을 위한 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를 넘고 있는 것
- ② 시설의 실내 장소에서 흡연하는 장소를 제공할 것을 주목적으로 할 것

### 필요한 대응 등

#### 점내 일부에 흡연실(=흡연 목적실)을 마련하는 경우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 주십시오.

- ① 법률에 정해진 기술적 기준을 충족한 흡연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기준은 9쪽 참조](#)

- ② 점포 출입구에 '흡연 목적실'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③ 흡연실 출입구에 '흡연 목적실'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입니다.

\* 표지는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점내 전부를 흡연화로 할 경우(=흡연 목적실)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 주십시오.

- ① 법률에 정해진 기술적 기준을 충족한 흡연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기준은 9쪽 참조](#)

- ② 점포 출입구에 '흡연 목적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입니다.

\* 표지는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대상

학교, 병원, 진료소, 조산소, 개호노인보건시설, 시술소, 아동복지시설, 행정기관 청사 등



### 규제 시설은 부지 내 금연입니다.

단 실외에는 특정 실외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대응 등



#### ▶ 특정 실외 흡연장소에 관하여

아래 3개 요건을 충족한 장소에 특정 실외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① 흡연하는 장소가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 표지되어 있을 것
- ③ 시설 이용자가 통상 출입하지 않는 장소일 것

\* 버스, 택시, 비행기는 차내(기내)에 흡연장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시행일은 2020년 4월 1일).

## 흡연실 분류와 표지 게시 흡연 전용실

▶ 담배만 피우는 방입니다. 식음 등 흡연 이외의 것을 할 수 없습니다.

### 요건

① 법률에 정해진 기술적 기준을 충족한 흡연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기준은 9쪽 참조](#)

#### ② 시설 출입구에

'흡연 전용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③ 흡연 전용실 출입구에

'흡연 전용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입니다.

\* 표지는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흡연실 분류와 표지 게시

##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경과 조치)

▶ 가열식 담배만 흡연이 가능한 방입니다. 식음 등 흡연 이외의 것도 가능합니다.

### 요건

① 법률에 정해진 기술적 기준을 충족한 흡연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기준은 9쪽 참조](#)

#### ② 시설 출입구에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③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출입구에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입니다.

\* 표지는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흡연실 분류와 표지 개시

# 흡연 가능실·흡연 가능점(경과 조치)

▶ 음식점(기존 소규모)만 만들 수 있는 흡연장소입니다. 식음 등 흡연 이외의 것도 가능합니다.

## 요건

### 〈흡연 가능실〉

① 법률에 정해진 기술적 기준을 충족한 흡연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기준은 9쪽 참조](#)

#### ② 시설 출입구에

'흡연 가능실'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③ 흡연 가능실 출입구에

'흡연 가능실'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입니다.

\* 표지는 흡연 가능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셨을 경우 보내드립니다.

## 요건

### 〈흡연 가능점〉

① 담배 연기(증기를 포함)가 실내에서 실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 천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 ② 시설 출입구에

'흡연 가능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래 그림과 같은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입니다.

\* 표지는 흡연 가능점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셨을 경우 보내드립니다.

#### \* 흡연 가능실, 흡연 가능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 흡연 가능실 설치 시설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고서 제출에 관해서는 10쪽 참조](#)

· 시설 내 객석 부분 바닥 면적 및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기재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제출 필요 없음)

## 기술적 기준 (흡연 목적실, 흡연 목적점, 흡연 가능실, 흡연 전용실,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에 필요한 담배 연기 유출 방지)

흡연실을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은 다음 3개

- ① 흡연실 출입구에서 실외로부터 실내로 유입하는 공기 기류가 매초 0.2m 이상일 것
- ② 담배 연기(증기를 포함. 이하 같음)가 실내로부터 실외로 유출하지 않도록 벽, 천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 ③ 담배 연기가 실외로 배출되고 있을 것

\* 2020년 4월 1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물로 관리권원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는 담배 연기를 충분히 정화하여 실외로 배기할 수 있는 흡연 부스 등을 설치함으로써 상기 ①②③의 기준과 동등 정도로 담배 연기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20세 미만인 분은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

20세 미만인 분에 대해서는 비록 흡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체 법에 정해진 흡연 장소에는 출입금지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비록 종업원일지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흡연실이 있는 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대책

개정법에서는 각 시설의 관리자에 대해 종업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노력 의무로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사업자에 대해 실내의 노동자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법에서 의무화되는 사항과 노동안전위생법의 노력 의무로 사업자가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직장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시설마다 실정에 따라 간접흡연대책을 추진합시다.

\* ‘직장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재정지원에 관하여

사업자가 간접흡연 대책을 실시할 때의 지원책으로 각종 흡연실 설치 등에 관련한 재정상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재정지원)간접흡연 방지대책 조성금〕

중소기업 사업주가 간접흡연 방지대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각종 흡연실 등 설치 등에 드는 공사비, 설비비, 비품비, 기계장치비 등의 경비에 대해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아이치 노동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조성금 신청에 관하여 > 고용환경·균등부 기획과 전화: 052-857-0313

흡연실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등 > 노동기준부 건강과 전화: 052-972-0256

## 흡연 장소를 설치할 때 배려 의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흡연장을 정하려고 할 때는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장소로 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당해 배려 의무 내용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흡연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출입구 부근이나 이용자가 많이 모이려고 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 연기 배출처에 관해 당해 흡연장소 주변 통행량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로 할 것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식점(기준 소규모)

## ‘흡연 가능실’ ‘흡연 가능점’을 설치할 경우의 신고에 관하여

‘흡연 가능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흡연 가능점’으로 할 경우에는 소정 신고서에 따라 점포 명칭이나 소재지 등을 당시에 신고해 주십시오.

【접수처】 \* 우송

Health Promotion Division, Health Department, Health & Welfare Bureau, City of Nagoya

수신처 Health Promotion Division, Health Department, Health & Welfare Bureau, City of Nagoya  
3-1-1 Sannomaru, Naka-ku, Nagoya 460-8508

문의 전화번호 등 전화: 052-972-4058 FAX: 052-972-4152 (8:45~17:30 토·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나 설치한 ‘흡연 가능실’ ‘흡연 가능점’을 폐지한 경우, 소정 신고서를 신속하게 상기 수신처에 신고해 주십시오.

자주 하는 문의	답변
표지는 어디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까?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p>‘흡연 가능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흡연 가능점’으로 할 경우 신고서는 어디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까?</p> <p>* ‘흡연 가능실’ ‘흡연 가능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해서는 4쪽 및 8쪽을 보십시오.</p>	<p><b>당 서포트 복을 우송으로 수령 받으신 분</b> 우송 때 봉투에 동봉한 신고서 서식을 사용해 주십시오.</p> <p><b>상기 이외의 분</b> 나고야시 공식 웹사이트에 서식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십시오.</p>
<p>‘흡연 가능실’을 설치할 경우의 조건에 <b>‘객석 면적 100㎡ 이하’</b>로 되어 있는데 <b>‘객석’</b>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p> <p>* 흡연 가능실’을 설치할 경우의 3개 조건            ①2020년 4월 1일 시점에서 영업하고 있을 것            ②<del>객석</del> 면적 100㎡ 이하            ③개인 또는 중소기업(자본금 5천만엔 이하)이 경영</p>	<p>점포 전체 중 객석에서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b>주방, 화장실, 복도, 계산대, 종업원 전용 공간</b> 등을 제외한 부분을 가리킵니다.</p> <p><b>&lt;객석 부분 예&gt;</b></p> <p>파란색 빗금선 장소가 객석 부분입니다.</p>
바(스낵바)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p><b>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 스낵바는 점포 내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흡연 가로 할 수 있습니다.</b></p> <p>* 자세한 것은 5쪽을 보십시오.</p>

## 【문의처】

**Health Promotion Division, Health Department,  
Health & Welfare Bureau, City of Nagoya**

**주소** 3-1-1 Sannomaru, Naka-ku, Nagoya 460-8508

**전화번호 등** 전화: 052-972-4058 FAX: 052-972-4152  
(8:45~17:30 토·일·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나고야시 간접흡연



[http://www.city.nagoya.jp/  
kenkofukushi/page/0000024729.html](http://www.city.nagoya.jp/kenkofukushi/page/0000024729.html)  
QR 코드는 (주)덴소 웨브 등록상표입니다▶



QR 코드로  
간단 접속